

## 第3章 地方行政의 構造와 機能

### 第1節 概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어 1948년 8월 15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自由民主主義를 정치의 기본질서로 한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따라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를 규정하여 서구식 지방자치제의 도입·실시를 도모하였다. 地方行政의 기본틀을 구성하는 지방행정의 구조가 1948년 11월 17일 공포·시행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작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특별시 및 광역시에 관한 특별법,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자치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하여 계속 변천을 거듭하여 왔다. 특히,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면서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능과 편제가 정비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地方議會의 구성 및 地方自治團體長의 선출을 계기로 地方行政構造와 機能이 많이 변화하였다. 1990년대에는 정부수립 후 수십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지방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地方行政組織 및 人力의 양적 중대경향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의 영향으로 인하여 체동이 걸렸으며, 특히 문민정부는 대폭적인 기구의 축소 및 정원감축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으로써 그동안의 도농분리적 접근을 탈피하여 도농통합적 行政區域改編으로의 방향전환이 있었다. 그리고 보다 내실있는 地方自治의 실시를 위하여 대폭적인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작업이 진행되었고, 조직개편권한의 이양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직개편이 가능하게 되어 동일한 계층의 地方自治團體들도 서로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간의 조직다양성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